

202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지방청 R&D 사업 설명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목 차

- Chapter • **0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지방청 R&D 지원개요
- Chapter • **0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 Chapter • **03** FAQ(자주 묻는 질문)
- Chapter • **0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사업개요

-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지원대상

- ☑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지원내용

- ① 디딤돌(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이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TIPS(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 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보육, 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TIPS	일반 트랙	최대 2년, 8억 원		
	딥테크 트랙	최대 3년, 15억 원		

지원 목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별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균형적 지역 성장 견인

‘26년 지원 규모

350억 원 내외 (350개 과제 내외/광주전남제주 : 25개)

지원형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 과제 수
자유공모	최대 1.5년, 2억 원 이내	75% 이내	350개 내외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방청 별 지원규모는 세부 지원내용 참고

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6.4.1~ ‘26.12.31)	금액	100,000	3,400	30,000	33,400	133,400
	비율	(75%)	(2.5%)	(22.5%)	(25%)	(100%)
2차년도 (‘27.1.1~ ‘27.9.30)	금액	100,000	3,400	30,000	33,400	133,400
	비율	(75%)	(2.5%)	(22.5%)	(25%)	(100%)
합계		200,000	6,800	60,000	66,800	266,800

지원일정

세부사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5년 12월 23일	'26년 1월 6일~1월 23일	2~3월	3~4월

추진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서면, 대면평가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공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 지원대상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신청자격

기관구분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u>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u> ① 소재지(본사 기준)와 지방청 R&D 공고 지역(광주전남제주)이 동일한 중소기업 ②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③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해당 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공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 지원대상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상세 내용

신청자격	상세 내용
소재지	① 소재지와 지방청 R&D 공고 지역(광주전남제주)이 동일한 중소기업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재지는 본사를 기준으로 적용
업력	① (업력 산정기준) 본 사업 공고 접수마감일(1.23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 (예외 적용)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단,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과제 신청·접수 시, 신산업 창업분야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한 내용이 신산업 창업분야와 상이할 경우 예외 적용 제외
R&D 첫 수행 기준	① (수행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예외 적용)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협력형R&D 1단계(사전연구) 과제는 수행 이력에서 예외 적용

공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서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구분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 (40)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1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역량 (20)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15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 (15)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 (5)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공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대면평가 ✓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지방청별 특화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구분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25)	기술개발 목표, 내용의 수준,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5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15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사업성(25)	구체적인사업화목표와전략,방법,일정,변수대응의적정성과기대효과의실현가능성	15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10)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 R&D)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15)	기업의과제수행역량(연구팀구성 계획,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역량및수행역할등)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 논문 등 기술적 기반	10
	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자금집행계획(5)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지방청 특화지표(20)	다음 페이지 참고	20

광주전남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대면평가 ✓ 특화분야 적합성, 연구조직 인프라, 지식재산권 보유, 개방형 혁신을 특화지표로 설정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특화분야 적합성	지역 특화 분야와 기술개발 아이템 간의 적합성 판단 ■특화분야 :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우주산업, 이차전지					5
연구조직 인프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유무 확인					5
	연구소 보유	전담부서 보유	미보유			
	5	3	1			
지식재산권 보유	개발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특허 또는 실용신안) 확보 여부를 확인 ■배점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점, 출원 건당 0.3점					5
	3점 이상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0.3점 이상 1점 미만	0점	
	5	4	3	2	1	
개방형 혁신	기술개발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기술간 융합, 신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판단					5

공통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제출서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 확인 필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 * '25.10.22.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필요	✓	
③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⑤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구체적인 인정서류는 “붙임2. 세부지원내용” 내 제출서류 파트 참고	✓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⑥	중소기업 확인서	✓	
⑦	지방청 특화지표 검토요청서	✓	
⑧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⑨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추가 제출 불가)		✓
⑩	지방청 특화지표 관련 증빙자료		✓

광주전남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방청R&D

제출서류 ✓ 지방청 특화지표 관련 증빙자료

지방청	공통	별도	
		특화지표	제출 필요 서류
광주전남청	연구개발계획서 내 “9.지방청 특화지표 검토자료” 및 별도 특화지표 검토요청서 작성·제출 ※ 각 특화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후 제출	특화분야 적합성	■ 연구개발계획서(별도 서식) 제출
		연구조직 인프라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 및 실용신안)	■ (등록) 특허등록증 및 특허등록원부 ■ (출원)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개방형 혁신	■ 연구개발계획서(별도 서식) 제출

Part1.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Q1.

1차 공고 내 “지방청 R&D” 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 R&D 과제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방청 R&D와 여성참여활성화 R&D 과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2.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 이번 공고 내 모든 과제는 “첫걸음”과제이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의 제외 조건에 예외 적용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위의 제외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적용)

Part2.

연구개발비 산정 등

Q1.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찾기 어려워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관련 서식·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Q2.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연구실운영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단,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 신청·접수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했더라도, 과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인정 될 수 있음

Part3.

신청서식 및 기타

Q1.

지방청 R&D 특화지표와 관련하여 해당하지 않는 과제도 ‘특화지표 검토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나요?

- ⇒ 특화지표 검토요청서는 필수제출 서류로 모든 과제가 제출해야 합니다.
- ⇒ 해당하지 않아 기재할 내용이 없으실 경우, “해당 없음” 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오.

Q2.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나요?

- ⇒ 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분량은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 단, 과제개요 / 자가진단 / 지방청 특화지표 검토자료 / 붙임(1~3)은 작성 분량에서 제외합니다.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 ①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 ②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글로벌 선도	수출지향형	최대 2년, 10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글로벌협력형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75% 이내	
중소기업 유망기술 개발	국가전략기술	최대 3년, 100억원 이내	75% 이내	
	일반	최대 2년, 5억원 이내		
	소부장			
	구조혁신			

공통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 지방청R&D (3월 공고 예정)

- 지원대상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신청자격

기관구분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u>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u> ① 소재지(본사 기준)와 지방청 R&D 공고 지역(광주전남제주)이 동일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해당 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업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